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0. 2. 5.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이영빈 의원 외 4명(박종길, 윤권근, 이신자, 김인호)
- 발의일자: 2020. 1. 13.
- 회부일자: 2020. 1. 13.
- 상정 및 의결: 제268회 달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2. 5.)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등으로 청년의 권리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청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청년의 연령 기준 확대,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등을 강화하고, 특히 달서구 특색에 맞는 청청(靑聽)기획단의 운영 및 활동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나. 개정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 기준 확대(안 제2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8조)
- 청청(靑聽)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관련법령 등]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정온주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청년의 권리 향상 및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달서구 청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기능 등을 추가함으로써 달서구 청년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달서구의 특색에 맞는 청청(靑聽)기획단 운영 및 활동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 “청청기획단은 교육 수행기능과 맞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13조제1항제3호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조항 삭제” 하는 것으로 제출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청년의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19세 → 18세)하고, 청청기획단의 기능을 일부 수정 · 보완하기로 의결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 중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을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정보 공유”로 한다.

< 수정조문 대비표 >

현행조례안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1. ----- <u>19세</u> ----- 제13조(청 청기획단) 3.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제2조(정의) ----- 1. ----- <u>18세</u> ----- 제13조(청 청기획단) 3. <u>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정보 공유</u>